

삼구아이앤씨 협력사 행동규범

개정 2024.07.03

(주)삼구아이앤씨 협력사 행동규범(이하 “규범”이라 함)은 삼구아이앤씨의 협력사가 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,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,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삼구아이앤씨가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바를 전달한다. 본 규범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 (Responsible Business Alliance), 국제노동기구(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) 핵심협약, UN 글로벌 콤팩트 10대원칙 등의 행동규범 참조하였다. 본 규범과 현지 법규가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. 또한 삼구아이앤씨는 본 규범을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, 변경사항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한다. 삼구아이앤씨(및/또는 외부 감사자)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협력사의 사업장을 방문 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인권/노동

가. 자발적 근로 (강제노동 금지)

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(노예, 인신매매 등)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. 채용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을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,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. 협력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,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나. 아동 고용 금지 및 유소년 근로자 관리

협력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. ‘아동’은 만 15세 미만(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) 또는 자국/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 보다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.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/야간근로에 투입하지 아니해야 한다. 실습중인 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/지원해야 한다.

다. 근로시간

협력사는 법령이 정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, 휴게시간 및 휴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라. 차별 금지

협력사는 채용, 임금, 승진, 보상,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, 피부색, 연령, 성별, 성적 지향, 성 정체성, 출신민족, 장애, 임신, 종교, 정치 성향, 노조 가입, 국적,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.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(임신여부 등)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. 또한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마. 임금과 복리후생

직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최저임금, 시간외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해당 되는 모든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바. 인도적 대우

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/육체적 강압, 폭언,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. 이를 위해 협력사는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며,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.

사. 결사의 자유 보장

협력사는 자국/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,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/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 또한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.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, 보복,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에 관하여 경영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.

2. 안전/보건

가. 산업 안전

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, 기술적/행정적 통제, 예방정비, 안전규정 마련,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,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적절한 착용을 관리/감독해야 한다.

나. 산업 재해, 질병 예방

협력사는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관리절차를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 반복작업,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피하고,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.

다.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

협력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, 소음, 분진 등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영향을 파악하고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관리/감독을 실시해야 한다.

라. 설비안전

협력사는 위험설비를 분류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.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/벽과 제어장치를 제공하고, 해당 시설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.

마. 식당과 숙소사 관리

협력사는 직원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,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/보관/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

제공해야 한다. 협력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, 적절한 비상구와 냉/난방, 환기장치,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.

바. 안전보건 교육

협력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.

3. 환경

가. 환경 법규 준수

협력사는 법정 필수 환경 인허가(예: 배출/방지시설 설치/운영/변경 신고)를 취득, 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한다.

나. 환경오염 예방활동과 자원·에너지 사용 절감

협력사는 공정개선, 원료대체, 예방보전, 자원보존, 재활용/재사용을 통해 자원/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전력과 연료 소비량 절감,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다. 수자원 관리

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,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.

라. 화학물질 관리

협력사는 유출 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(지정 폐기물 포함)을 파악하고, 해당 물질의 안전한 저장, 운반, 사용, 재활용/재사용, 폐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유출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한다.

마. 폐기물 처리

협력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,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바. 대기오염 관리

협력사는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, 에어로졸, 부식성 가스, 분진, 오존층 파괴물질, 연소부산물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고, 배출 현황은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.

사. 동물복지

협력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(동물실험의 원칙)을 준수해야 하며, 세계동물보건기구(WOAH)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.

아.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

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·복원·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,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·감소·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또한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,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,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4. 윤리/공정거래

가. 투명한 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

협력사는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,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,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한다.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/관리해야 한다.

나. 이해상충 방지

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.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·제안·허가·제공해서는 안 된다.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,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한다.

다. 공정·투명 거래 준수

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라. 위조부품 방지

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,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, 판매해서는 안 된다.

마.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

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,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법인, 단체,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.

바. 정보 공개

협력사는 관련 법규,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/안전점검/환경 관리 실태, 경영 활동, 지배구조,

재무상태,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.

사. 지적재산권 보호

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, 기술/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. 삼구아이앤씨의 거래에서 알게 된 삼구아이앤씨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.

아. 신원보호와 보복금지

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자. 개인정보 보호

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(협력사, 고객사, 임직원 포함)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한다.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, 보관, 처리, 전송,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/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5. 경영시스템

협력사는 자체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본 규범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가. 자율준수 의지표명

나. 경영 책임 명확화

다. 관련법과 규정·고객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

라. 회사 운영과 관련된 안전·환경·보건 및 노동관행, 윤리적 Risk의 평가/관리

마. 목표관리 및 성과평가/보상

바. 구성원 교육/훈련 프로그램 운영

사. 임직원 피드백 및 참여

아. 거래업체(하위 협력사) 관리

자.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 문서 기록/관리

협력사는 삼구아이앤씨와의 거래방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자가평가 등을 수행/관리해야 하며, 본 규범을 하위 협력사에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.

[끝]